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623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10. 18. 체결된 50,000,000원, 2019. 11. 9. 체결된 50,000,000원의 각 금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관련

1) 원고는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영업직원들의 권유를 받아 2013. 12. 4.부터 2015. 12. 1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투자하였다.

2) D 대표자 사내이사 E, 영업 1본부장 C 등 회사 관계자들은 2015년경 원고 등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각 기소되었고, 2018. 12. 3. 1심에서 C은 원고 등에 대한 투자사기 범행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570, 4664(병합), 4927(병합), 5342(병합)]. 이에 대하여 C과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6. 4. 2심에서 C에 대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2462호), 이에 C과 검사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8. 29.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9도8820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자신의 투자금(2,365만 원) 편취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다른 투자자들(F, G, H, I, J, K, L, M, N, O)의 편취 피해금 합계 2억 4,535만 원 상당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2020. 9. 11. 양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C과 D 대표자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46195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1. 4. 14. C, E 등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2억 6,900만 원(원고 피해금 2,365만 원 + 양수 피해금 2억 4,53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4)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E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029 사건에서 2022. 8. 18. 원고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부분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해당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하고, E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의 피해금 2,36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1).

나. 사해행위 관련

1) C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3. 11. 15. P로부터 광명시 Q아파트 R호(이하 'Q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1. 22. Q아파트에 관하여 각 1/2 공유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과 피고는 2019. 10. 18. S에게 Q 아파트를 대금 4억 2,8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10. 21.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는 S으로부터 2019. 10. 18. 5,000만 원, 2019. 11. 9.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피고는 2019. 12. 18.경 광명시 T아파트 U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피고를 세대주로, C을 세대원으로 한 전입신고를 마쳤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10, 11, 12, 13, 1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광명시장, 광명시 V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W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자신의 피해금과 양수금 채권을 합한 2억 6,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다.

2) Q아파트는 원래 채무자 C이 2014. 1. 22. 그 매수자금 전부를 마련하여 취득한 C의 특유재산이고, 그 중 1/2 공유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다. C은 2019. 10. 18.경 원고 등 D 투자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Q아파트를 매도 처분하고, 그 매수인인 S으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 중 2019. 10. 18. 5,000만 원, 2019. 11. 9. 5,0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1억 원(5,000만 원+5,000만 원)을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C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돈으로 T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임차하였다. 위와 같은 C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채권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합한 2억 6,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피해금인 2,36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양수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관련사건 1심 판결(을 2호증)이 선고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구체적으로 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 양수행위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서 실질적인 채권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고 별개 사건인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수익자인 피고 역시 원고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충분히 다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원고 자신의 피해금 2,36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D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063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21. 4. 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위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총액의 91.7%를 출자 전환하고, 8.3%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채권은 공동불법행위자인 D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고, D에 대한 피고 주장과 같은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D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추후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D로부터 위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C의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없고, 달리 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신주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실질적인 만족을 얻었다거나 D가 원고에게 현금 변제계획을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금전증여 계약) 존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각 제출명령 결과들만으로는 Q아파트 중 피고의 기존 1/2 공유지분이 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Q아파트 매수인 S이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1억 원이 C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과 피고가 2014. 1. 22. Q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 C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고 소득금액이 피고에 비하여 다액이라거나 Q아파트에 관하여 2014. 1. 22. 채무자 C, 채권최고액 합계 2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Q아파트 매수자금 전부를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C이 자신을 단독 채무자로 하여 Q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Q아파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피고 지분을 포함한 Q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한 것이고, 해당 근저당권 역시 매수인 S이 그대로 인수하였다가 2019. 12. 17. X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1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받은

돈으로 이를 해지말소하였을 뿐, C이 Q아파트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실질적으로 전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Q아파트 취득을 위한 위 대출금을 오로지 C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과 피고가 공동 거주하던 T아파트 Y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이 Q아파트 매수자금이 되었다는 것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마련한 사람이나 귀속관계를 알기 어렵다.

② 설령 Q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C이 마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이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거나 부담하는 경우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사 외에도 다른 일방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하는 등 다른 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금 부담관계가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등기의 추정력이나 부부재산의 공유 추정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질적인 소유의 의사’ 유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③ Q아파트는 C과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한 부동산으로, 부부간 공유등기는 오히려 실제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볼 측면이 강하고(등기 추정력 반복을 위한 부부간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사건들 대부분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들이다), 달리 이 사건에서 부부 사이인 C과 피고 사이에 Q아파트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한 채 C이 Q아파트 전부를 단독소유하려는 의사로 이를 취득하고 그 중 1/2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결국 피고는 Q아파트의 1/2 공유지분권자로서 그 매도대금(4억 2,800만 원) 중 절반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 과세관청에 2018년 종합소득금액 8,602,707원, 2019년 종합소득금액 20,693,781원을 신고하는 등 2018년경 이후 C과 별개로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며(2022. 7. 1.자 광명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2019. 12. 18. Z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바(을 1호증), 피고가 2019. 12. 18. 임차한 T아파트 U호의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마련하는 데 관하여 C으로부터 다른 금전 증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형우

1) 이후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4914호로 원고와 E의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이후 피고는 2022. 1. 11. 현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마쳤다.